

(우)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[6574] / 보험연구팀 팀장 김선우[6576] / 팀원 천승민[6580]/ E-mail : kmaruc26@gmail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05194호

시행일자 2026. 8. 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5호 (2026.08.01.)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6호 (2026.08.01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불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,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주요내용

○ [별표 2] 제1호 가목 중,

- ‘비디오 두부충동검사’ 본인부담률·적용일·평가완료차수 변경
- ‘항-Infliximab 항체[정밀면역검사](정량)’ 본인부담률·적용일·평가주기·평가완료차수 변경
- ‘심전도 검사-심전도 감시-홀터기록’, ‘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’ 적용일·평가완료차수 변경

○ [별표 2] 제1호 다목 중,

- ‘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’, ‘봉합용 고정재료’ 적용일·평가주기·평가완료차수 변경
- ‘내시경 담체관 ACCESS CATHETER’ 본인부담률·적용일·평가주기·평가완료차수 변경
- ‘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’ 신설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주요내용

○ I. 행위 제2장 검사료 중,

- ‘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’ 개정
- ‘항-Infliximab 항체[정밀면역검사](정량)의 급여기준’ 개정

○ III.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,

- ‘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탭플 급여기준’ 개정

○ III.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,

- ‘내시경하 담체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’ 개정

붙임

1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(hwp) 1부.
2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(pdf) 1부.
3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(hwp) 1부.
4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(pdf) 1부.
5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(hwp) 1부.
6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(pdf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.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사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